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(이하 "전용철도운영자"라 한다)가 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

**제24조(전용철도 운영의 양도 · 양수)**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 ·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 ·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6. 8. 7., 2008. 3. 14., 2008. 6. 25., 2011. 4. 11., 2013. 3. 23.>](#)

1. 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
2. 양도 ·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
3. 삭제 [<2006. 8. 7.>](#)
4. 법인 임원의 성명 ·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

**제25조(전용철도 운영의 합병)**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6. 8. 7., 2008. 3. 14., 2008. 6. 25., 2011. 4. 11., 2013. 3. 23.>](#)

1. 합병계약서 사본
2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
3. 삭제 [<2006. 8. 7.>](#)
4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 ·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
5.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

**제26조(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)**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

1.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

**제27조(전용철도 운영의 휴업 · 폐업의 신고)**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(폐업)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휴업 또는 폐업 사유를 적은 서류
2.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, 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
3. 폐업의 경우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

[\[전문개정 2014. 12. 10.\]](#)

**제28조(점용허가신청 등)**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